

특별 기고

교회와 인권의 역사 그리고 동성애(同性愛)



●지영준 변호사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육군군사법원 군판사로 재직하였고, 현재 바른군 인권연구소 법률위원 및 법무법인저스티스 대표 변호사이다.

■ 들어가며 : 교회가 반인권·혐오세력인가

가. 동성애 이슈와 혐오세력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는 인권이다. 차별하지 말라’는 주장이 강력하게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¹ 국회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래, 2018년 20대 국회도 인사청문회가 한창이었다. 이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질문이 “후보자께서는 ‘동성결혼(同性結婚)’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다.² 필자가 보기에 이

러한 질문은 2017. 9월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가 부결된 초유의 사태가 있던 이후의 일이다.³

이렇듯, 국회 인사청문회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동성애, 동성혼(同性婚)’이슈는 언젠가부터 기독교를 ‘보수’ 또는 ‘혐오단체’, 그리고 ‘반인권’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다.⁴

1 유 중 하나가 동성애 문제였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일다. 김 후보자는 2016년 7월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군형법 92조 6항에 대해 위헌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2 연합뉴스TV 2018.9.30. [여의도 풍향계] 동성애는 왜 인사청문회 단골 소재로 등장했나? :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등장한 단골 소재도 있습니다. 바로 동성애 문제입니다. 동성애 이슈는 작년 9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로 정치권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발목을 잡은 사

3 경향신문 2018.09.03. [단독]김이수 “헌재소장 임명 동의 부결은 예상 밖의 일...꽤 충격받았다” 퇴임 인터뷰 : 김이수 헌법재판관(65)은 2012년 9월 민주당 추천으로 국회에서 선출돼 임명됐다. 조대현 재판관 후임으로 추천된 조용환 후보자가 찬안함 발인 등의 이유로 낙마하면서 공석이 1년2개월 되던 시점이다. 2017년 5월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내정했다. (중략) 헌재소장 임명 동의가 부결되던 지난해 9월11일 후보자는 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에 있었다.

1 이러한 배경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의 역할이 크다고 본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는 ‘인권’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 또 제3호에서는 ‘차별행위금지’의 예시로서 ‘성적지향’을 열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연합뉴스TV 2018.9.30. [여의도 풍향계] 동성애는 왜 인사청문회 단골 소재로 등장했나? :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등장한 단골 소재도 있습니다. 바로 동성애 문제입니다. 동성애 이슈는 작년 9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로 정치권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발목을 잡은 사

나. 동성애 논의와 종교

동성애 특히 남자 동성애자들의 항문성교를 의미하는 영어단어 ‘Sodomy(소도미)’는 성경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에서 유래 되었다고 한다.⁵ 그리고, 2001년 전까지 동성 결혼(同性結婚)을 허용한 사회는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고 한다.⁶

특히,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고 있는 많은 중동지역 국가들은 동성애를 형벌로 다스리고 있다. 그러므로, 이슬람국가에서 동성애의 합법화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동성애(同性愛)’문제에 있어서, 기독교가 동성애·동성결혼(同性結婚)을 반대하면 반인권 또는 혐오단체인가.⁷

다. 논의 방향

동성애·동성혼을 반대하면 반인권·혐오세력이라고 단정하는 배경에는 먼저 ① ‘동성애도 인권이다’라는 것과 ②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차별(불평등)’에 해당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필자는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인권’과 ‘평등(차별)’의 문제를 법률적인 관점에서 살펴보

5 성경 창세기 19장에서 ‘소돔’이라는 도시는 물질적으로 매우 풍요로웠으나 성적, 도덕적으로 타락이 극에 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결국 불로 온 도시가 멸망하게 되었다. 역사가들은 이 도시에서 성행한 성적 타락 중 하나가 ‘동성애’라고 추측하는데 여기에서 영어의 ‘소도미’라는 단어가 유래된 것으로 본다 : 정소영, 미국은 어떻게 동성결혼을 받아들였나(미국법원의 동성결혼합법화 12대 판결), 도서출판 렉스(2016, 7, 27.), 6번

6 정소영, 미국은 어떻게 동성결혼을 받아들였나(미국법원의 동성결혼합법화 12대 판결), 도서출판 렉스(2016, 7, 27.), 265번

7 백상현, 기독교인 혐오사회, 복의근원(2018, 12, 14.)

고자 하는데, 특히, 인권의 역사에서 기독교(교회)의 역할을 조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 인권과 차별금지 그리고 기독교적 사상

가. 자유와 평등

근대 시민혁명 이후 인간의 정신세계와 국가적 생활을 지배하는 2대 이념은 자유(自由)와 평등(平等)이었다. 근대사에서 평등의 이념이 국가권력과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근본원리로 확립된 것은 ① 칼빈(Calvin)派的 기독교적 사상과 ② 근대 합리주의적 자연법 사상의 공적이라 할 수 있다.⁸

칼빈派는 기독교적 원리인 신(神)에 의한 평등한 지배 내지 신 앞에서의 평등이 정치적·경제적 영역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볼프(C. Wolf), 로크(J. Locke), 루소(J. J. Rousseau) 등 17·8세기의 합리주의적 자연법론자들은 ‘신의 권위’를 합리적인 자연법(自然法)론으로 전환시켜 자연법에 의거한 인간의 생래적 평등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평등사상의 영향으로 18세기 후반 이래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프랑스 인권선언’을 비롯한 각국 헌법이 평등의 원칙을 실정화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⁹

8 권영성, 헌법학원론(법문사, 1994), 398쪽

9 권영성, 헌법학원론(법문사, 1994), 399쪽

나. 칼빈주의 종교개혁과 헌법의 기초

칼빈주의 종교개혁, 즉 개신교운동은 먼저 프랑스의 신학자이며 법학자인 장 칼뱅(1509~1564)의 지도아래 제네바에서 생성되었고, 이후 250년 동안 프랑스·스코틀랜드·네덜란드·독일·영국·북미의 많은 지역을 휩쓸었다.¹⁰

칼뱅주의자들은 근대 초기의 서구에서 인권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역할을 한 주요 헌법 문헌들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냈다. 여기에는 제네바의 1541년과 1561년의 교회규례(Ecclesiastical Ordinance)와 1568년의 시민칙령(Civil Edict), 네덜란드의 1579년 위트레흐트동맹(Union of Utrecht)과 1581년 철회선언(Act of Abjuration), 프랑스의 1598년 낭트칙령(Edict of Nantes), 스코틀랜드의 1643년 엄숙동맹(Solemn League and Covenant), 영국의 1628년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s)과 1689년 권리장전(Bill of Rights)과 관용령(Toleration Act), 뉴잉글랜드의 1641년 자유본체(Body of Liberties)에서부터 1780년 매사추세츠 헌법(Massachusetts Constitution)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헌들이 포함된다.¹¹

다. 미국의 독립선언과 기독교 사상

1) 영국에서의 인권

10 존 워터 주니어, 정두메 옮김, 권리와 자유의 역사(IVP, 2015), 19쪽

11 존 워터 주니어, 정두메 옮김, 권리와 자유의 역사(IVP, 2015), 22쪽

앞서 본 영국의 1689년 12월 16일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은 ‘명예혁명’의 결과였다. 그리고, 1628년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s)은 ‘청교도혁명(1640~1660년)’과 관련을 가지는 인권선언이다.^{12,13} 한편, 1620년 청교도인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향하게 되었다.¹⁴

영국의 인권선언이 신분적 자유와 권리를 개별 헌법문서에 보장한 것과 달리, 미국에서는 천부불가침의 자연권을 선언하고 근대적 의미의 기본권 목록을 최초로 헌법전에 성문화하였다.¹⁵

2)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미국의 독립선언

전문 16개 조항으로 구성된 1776년 6월 12일의 ‘버지니아 권리장전’은 ‘천부 불가침의 권리’(inherent, unalienable)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¹⁶

12 [네이버 지식백과] 권리청원 [Petition of Right, 權利請願] (두산백과) : 국왕은 권리청원을 승인한 이후에도 국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해나갔으며, 1629년의 회를 해산함과 동시에 의회의 지도자를 투옥한 뒤 11년간 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전제정치를 하였다. 이것이 청교도혁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13 [네이버 지식백과] 청교도 혁명 : 1640~1660년 영국에서 청교도가 중심이 되어 일으킨 최초의 시민혁명. 영국의 절대주의는 튜더왕조 최후의 여왕 엘리자베스 1세 때에 최고조에 달하였다. 그 치세 중에 이미 청교도의 국교회 비판이나 의회에서의 절대주의 비판 등이 있었지만, 당시의 절대주의는 별다른 파탄을 보이지 않고 다음의 스튜어트왕조로 넘어갔다.

14 위키피디아(2018.9.16. 검색어 메이플라워호) : 1620년 9월 16일(율리우스력 9월 6일) 존 카버, 윌리엄 브래드퍼드를 비롯한 영국의 청교도 102명이 잉글랜드 남서부 플리머스에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신대륙(북아메리카)의 플리머스로 떠났다. 당시 이 배의 승객 102명, 승무원은 25에서 30명이었다. <https://ko.wikipedia.org/wiki/%EB%A9%94%EC%9D%B4%ED%94%8C%EB%9D%BC%EC%9B%8C.%ED%98%B8>

15 홍성방, 헌법 I, 현암사(1999), 158쪽

16 That all men are by nature equally free and independent, and have certain inherent rights, of which, when they enter into a state of society, they cannot, by any compact, deprive or divest their posterity;

그리고, 1776년 7월 4일의 「미국독립선언」(Declaration of Independence)은 로크가 주창한 바와 같은 자연법사상에 기초한 자유주의적 국가관을 공표한 것으로 ‘자연권적 인권의 승인’등을 선언하고 있는데, 특히, 모든 인간은 ‘창조주(Creator)’에 의해 양도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¹⁷

3)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1789년 8월 26일 프랑스의 국민의회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선포하였는데, 이는 와싱턴의 친구이며, 미국독립전쟁에도 참여한 라파외트 Marquis de la Fayette(1757~1834)가 제퍼슨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전문 17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인권선언은 전문에서 인권의 자연권성, 불가양성, 신성성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인권선언은 미국의 인권선언들과 많은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¹⁸

4) 인권의 기원(起源)에 대한 논쟁

namely, the enjoyment of life and liberty, with the means of acquiring and possessing property, and pursuing and obtaining happiness and safety. ;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평등하게 자유롭고도 자주적이며 일정한 천부의 권리들을 갖고 있는 바, 인간들이 한 사회의 성원이 될 때, 예컨대 생명과 자유의 향유와 같은 그러한 권리를 후손들로부터 박탈할 수 없다...

17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that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that among these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18 홍성방, 헌법 I, 현암사(1999), 160~161쪽

금세기 초 독일의 저명한 국법학자인 옐리네크(Georg Jellinek)와 프랑스의 대표적 정치학자 부뜨미(Emile Boutmy)는 인권의 기원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고 한다.¹⁹

부뜨미는 사상적 측면을 강조하여 18세기의 프랑스계몽철학, 특히 루소야 말로 인권의 시라고 할 수 있으며, 루소의 사상은 그 후 프랑스혁명이 진행되는 가운데, 인권선언에서 구체적인 표현을 보았고, 이를 계기로 전세계에 확산되었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서 옐리네크는 제도사적 측면을 강조하여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였다. 그는 1776년 버지니아 헌법 및 기타 식민지 각주의 헌법에 규정된 권리장전이야말로 1789년 성립된 프랑스인권선언의 모델을 이루고 있다고 하면서, 인권의 역사는 미연방헌법 및 주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라. 인권보장의 현대적 경향과 현황

(1) 인권보장의 20세기적 경향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인권선언사는 20세기적 인권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색과 새로운 경향을 띠게 된다.²⁰

그 하나는 사회국가원리의 수용에 따른 인권선언의 사회화(사회적 기본권의 확충)와 사회주의국가의 등장으로 사회주의적 인권선

19 홍성방, 헌법 I, 현암사(1999), 154쪽

20 권영성, 헌법학원론(법문사, 1994), 314쪽

언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영역에 있어서 자유권(自由權)에 못지않을 정도로 사회권(社會權)이 중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둘은 자연권사상의 부활과 기본권보장에 대한 자연법사상의 영향이다. 그 셋은 인권선언의 국제화 내지 국제적 차원에서의 인권보장이다.²¹

(2) 기독교 교회의 사회윤리와 사회권

사회권은 산업사회의 등장에 따른 새로운 시대를 특징짓는 법발전의 단계이다. 전통적인 시민권 일반과 마찬가지로 사회권도 기존의 사회질서와 ‘정의의 명령의 집대성’(eine Sammlung von Gerechtigkeitsgeböten)인 자연법사상 사이의 한 부분이다.²²

사회권의 발달에는 기독교 교회의 사회윤리 또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다. 곧 19세기의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기독교는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후일 비오 11세의 교황의 회칙, 1891년 레오 13세 교황의 노동현장(Rerum novarum)으로 나타났다. 기독교의 사회윤리에서는 노동자의 단결권은 자연권으로 이해된다. 이로써 기독교의 자연법은 사회의 발전에 따른 시대에 적합한 표현방법을 찾아내었고, 이론과 실무에서 기본권 문제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²³

21 권영성, 헌법학원론(법문사, 1994), 314쪽

22 홍성방, 헌법 I, 현암사(1999), 166쪽

23 홍성방, 헌법 I, 현암사(1999), 176쪽

(3) 국제연합의 성립과 인권의 국제화

① 「세계인권선언」

인권보장의 국제화는 이미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시작되었다. 특히 1919년 베르사이유 강화조약의 결과로 1919년 6월 28일에 설립된 국제노동기구(ILO)는 1946년 이후 국제연합의 특수기구로 활동하고 있다.²⁴ 그러나, 인권이 본격적으로 국제적 선언, 결의, 협약 등에서 보장되기 시작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일이다. 1945년 6월 26일 국제연합 헌장이 선언되고, 이러한 국제연합헌장의 정신에 기초하여,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제3차 총회에서 모든 인간 가족의 구성원의 평등·불가양의 권리를 고백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었다.²⁵

「세계인권선언」이 공포된 이후 국제연합인권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권리들에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커다란 노력을 경주한 결과 1966년 12월 16일 「국제인권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Human Rights)이 통과되었다. 이 규약은 전문 31개 조로 구성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A규약)과 전문 53개 조로 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B규약) 및 B규약 선택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²⁶

② 제3세대 인권

24 홍성방, 헌법 I, 현암사(1999), 178쪽

25 홍성방, 헌법 I, 현암사(1999), 179쪽

26 홍성방, 헌법 I, 현암사(1999), 181쪽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있고 난 후 대략 40년 사이에 150개가 넘는 전쟁에서 대강 2,000만의 인간이 목숨을 잃었다. 그런가 하면 전세계적으로 인간의 상상을 불허하는 절대적 빈곤 속에서 살고 있는 인간의 숫자는 8억에 달하며, 5억의 인간이 항시적인 기아 속에서 살고 있고 날마다 기아 때문에 죽어가는 어린이의 숫자는 4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²⁷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1972년 바작(Karel Vasak)은 '새로운 인권, 곧 제3세대 인권이란 개념을 고안해 내었다. 이미 국제인권법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제1세대 인권,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제2세대 인권이라 부르고, 여기에 제3세대 인권, 곧 새로운 인권이 첨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엇을 제3세대 인권으로 보아야 하는지, 제3세대 인권이라는 것을 인정할 것인지, 전통적인 인권론의 범위 내에서 실현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²⁸

결국, 제1세대, 제2세대 인권이 자연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제3세대 인권은 '인위적'인 것이다.

(4) 대한민국 헌법과 기독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의 탄생은 어떠한가. 1910년 8월 29일의 한일합병조약으로 비

록 일제에 주권은 탈취당했으나, 우리 민족은 거족적인 3·1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그 역사적 산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구성되고 헌법이 채택되었다.²⁹ 앞서 1919년 재일(在日) 기독교 유학생이 주축이 됐던 2·8독립선언이 이후 3·1운동과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의 시발점이 되었다.³⁰³¹³²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광복을 맞이한 지 3년만인 1948년 5월 10일에, 한국 헌정사상 최초의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었다.³³³⁴

마. 21세기 유엔의 패러다임 전환

29 권영성, 헌법학원론(법문사, 1994), 106쪽

30 jibc 2019.2.8. 100년 전 그 함성처럼...2·8독립선언 한·일 동시 기념식 ; 2·8독립선언의 현장이었던 YMCA 건물은 관동대지진으로 없어진 뒤 1926년 지금의 장소로 이전해왔습니다.

31 동아일보 2019.2.8. [단독]2·8독립선언과 3·1만세운동, 당시 중국·대만에 큰 영향 미쳐 ; 2·8독립선언과 3·1만세운동이 당시 재일(在日) 중국 및 대만 유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중국의 5·4운동과 대만의 자치운동까지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정민 메이지학원대학(明治學院大學) 교수는 이날 발표할 논문 '한일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는 2·8독립선언과 3·1운동'에서 일본 기독교인들의 양분된 반응을 자세히 소개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일본 기독교인들은 3·1운동을 한국 기독교인들의 편협한 애국심과 미성숙한 유대주의적 신앙심에 의해 야기된 소요사태로 진단하는 측(와다세 츠네요시 등)과 조선총독부의 조선인에 대한 차별 정책으로 야기된 불만이라는 측(요시노 사쿠조 등)으로 나뉘었다. 하지만 양측 모두 한국인들의 독립 요구에는 침묵한 채 일제의 한국통치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다

32 동아일보 2019.2.9. 2·8독립선언,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33 헌법 제10조 제1문 후단은 「모든 국민은 . . .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에 관한 입법례는 1776년의 버지니아 권리장전 제1조와 미국의 독립선언 제2절 등이 있다(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4, 393쪽)

34 권영성, 헌법학원론(법문사, 1994), 393쪽,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 헌법에서 행복추구권이 신설된 이래 현행헌법도 이것을 계승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의 수용으로 현행 헌법의 기본권 체계의 구조에 적지 아니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지만, 행복추구권이 헌법에 규정된 이상, 기본권의 전체계와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각주1) 허영교수도 행복추구에 관한 우리 헌법규정은 「우리 헌법규정 중에서 체계적으로 가장 문제가 있는 규정이다. 너무나 당연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불필요한 의문만을 생기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다.

27 홍성방, 헌법 1, 현암사(1999), 182쪽

28 홍성방, 헌법 1, 현암사(1999), 182~185쪽

(1) 1989년 이후 유엔의 변화

1989년 베를린장벽이 무너지면서 유엔은 더 이상 1948년의 유엔이 아니었다. 1948년 유엔이 세계인권선언문을 채택했을 때는 여전히 그 안에 인류를 보호하는 보편적인 권리가 담겨 있고, 사회의 근본적이고 자연스러운 제도가 있다는 데 대해 전 세계가 동의하고 있었다. 1989년에 있었던 공산주의의 몰락은 모든 이데올로기의 종말을 가져오고 세계평화가 손에 잡힐 것만 같은 희망을 불러 일으켰다.³⁵

(2) 68혁명의 제도권 진입

1968년 거리에서 발생한 저항운동은 이제 ‘제도권으로의 진입’으로 발전했고, 심지어 유엔과 유럽연합에서 권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었다.³⁶

68세대가 성장하여 정치-사회적 주도권을 잡는 시기에 그들의 철학과 이데올로기의 완성은 ‘법제화’되기 시작하였다.³⁷

한편, 2000년, 유럽연합은 새로운 인권문서인 유럽연합 기본권헌장을 채택하였다.³⁸

35 가브리엘 쿠비 지음, 정소영 옮김, 글로벌 성혁명, 밝은생각(2018), 82, 84쪽

36 가브리엘 쿠비 지음, 정소영 옮김, 글로벌 성혁명, 밝은생각(2018), 68쪽

37 이정훈,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 킹덤북스(2018), 221쪽 ; 에릭 제무르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프레뱅법이라고 불리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 지는 시점이 바로 프랑스가 자살한 때라고 경고하였다고 한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철학과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인간의 타락과 방종을 비판할 수 없는 상황이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에 확산되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붕괴를 초래한 것이다.

38 가브리엘 쿠비 지음, 정소영 옮김, 글로벌 성혁명, 밝은생각(2018), 132쪽

(3) 21세기 인권과‘SOGI’

21세기 유엔(국제연합)의 최대 ‘인권’이슈는 ‘SOGI’ 즉, Sexual Orientation & Gender Identity 이다.

이 같은 사고방식은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황까지 나서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가 하나의 유행이 된 것 같다’고 걱정하고 있다.³⁹

■ 동성애와 인권(人權)논의

가. 인권과 제도보장

1) 인권과 기본권

(1) 인권은 모든 인간이 인간이기만 하면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누리는 권리로서 ‘자연권’이다.⁴⁰ 그런데, 인권은 헌법에 열거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⁴¹ 그러나, 인권은 그 내용이 불명확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어렵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법적 실정화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헌법을 통해서 실정화한 인권이 기본권이다.⁴² 인권은 자연법에 따라 인정되지만,

39 중앙일보 2018.12.3. 교황 “동성애 유행된 듯...성직자에게 동성애 자리는 없다” ;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가 하나의 유행이 된 것 같다”며 성직자 사회에 존재하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1일 이탈리아 일간 코리에레 델라 세라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번 달 출간 예정인 스페인 신부 페르난도 프라도의 책 『성소의 힘』(La ForzadellaVocazione)에 실린 인터뷰를 통해 동성애에 대한 견해를 내비쳤다. 이 책의 저자는 지난 8월 교황과 교황청에서 만나 인터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황은 이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가 하나의 유행이 된 것 같다. 이 같은 사고방식은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걱정했다.

40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1994. 4. 신판), 307면

41 헌법 제37조 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42 허완중, 인권과 기본권의 연결고리인 국가의 의무, 저스티스 통권 제124호 (2011. 6), 136면

기본권은 실정법이 보장한다.⁴³

기본적 인권(기본권)은 보편성, 천부성, 항구성, 불가침성이라는 일반적 특질이 있고, 또한 보편성, 도덕성, 근본성, 추상성, 우월성이라는 다른 권리와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⁴⁴⁴⁵

(2) 제도(制度)보장과 인권보장

인권 또는 기본권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제도(制度)보장이 있다. 제도(制度)보장이란 사유재산제, 선거제도, 공무원제도, 가족제도 등과 같이 국가의 존립의 기반이 되는 일정한 법적·정치적 제도를 헌법적 수준에서 보장함으로써 당해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제도 보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권보장의 강화에 있다.⁴⁶

2) 성적자기결정권

(1)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우리 「헌법」제10조 제1문 후단은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복추구권’으로부터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파생되기도

한다.⁴⁷

또한, 헌법재판소 1990. 9. 10. 자 89헌마82 결정은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의 위헌여부에 대한 것으로, 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이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판시하였다.

(2) 구체적인 예

이러한 ‘성적자기결정권’이 문제된 사례는 ① ‘낙태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헌법재판소 2012. 8. 23.자 2010헌바402 결정)⁴⁸, ② ‘혼인빙자간음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304조(헌법재판소 2002. 10. 31.자 99헌바40결정, 2009. 11. 26. 자 2008헌바58 결정)⁴⁹, ③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헌법재판소 2015. 2. 26. 자 2009헌바17 결정)에 대한 위헌 논의에서 었다. 그리고 간통죄 등은 비로소 위헌 결정에 이르게 되었다.⁵⁰

47 헌법재판소 1991. 6. 3. 자 89헌마204 결정 : “이른바 계약자유 원칙이란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의, 어떠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느냐 하는 것도 당사자 자신이 자기 의사로 결정하는 자유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여, 이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속에 함축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48 이에 대해 자기낙태죄를 처벌하고 있는 형법 제269조 제1항은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추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49 헌법재판소는 ① 2002. 10. 31. 자 99헌바40결정에서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제한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그런데, ② 2009. 11. 26. 자 2008헌바58 결정에서는 이 조항이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혼인빙자간음죄(형법 제304조)도 비범죄화(非犯罪化)되었다.

50 헌법재판소 2015. 2. 26. 자 2009헌바17 결정 ; 헌법재판소는 1990. 9. 10.

43 허완중, 위 논문, 제138면
 44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1994. 4. 신판), 307면
 45 허완중, 인권과 기본권의 연결고리인 국가의 의무, 저스티스 통권 제124호(2011. 6), 136면
 46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1994. 4. 신판), 213면

이로써, 간통죄는 형법 제정(1953. 9. 18.) 시부터 처벌되어 오다가, 2015. 2. 2.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비범죄화(非犯罪化)’된 것이다.⁵¹

반면, ‘성매매’를 규제하는 법률52에 대해, 헌법재판소 2016. 3. 31. 2013헌가2 결정에서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성판매자의 입장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도 제한하고 있다고 보았다.⁵³ 한편,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⁵⁴ 그리고

89헌마82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데, 반대의견으로 재판관 한병재, 이시윤의 헌법불합치 의견과 재판관 김양균의 위헌의견이 있었고, 1993. 3. 11. 90헌가70 결정에서는 위 89헌마82 결정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 뒤 2001. 10. 25. 2000헌바60 결정에서는 재판관 권성의 위헌의견이 있었으나, 법정의견은 위 89헌마82 결정의 판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하여 입법자가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어 2008. 10. 30. 2007헌가17등 결정에서는 재판관 김종대, 이동훈, 목영준, 송두환이 위헌의견, 재판관 김희옥이 헌법불합치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위헌정족수 6인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51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의 대상이 된 것은 위 최초 ① 현재 1990.9.10.자 89헌마 결정이었으며, 이 결정에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② 1993. 3. 11. 90헌가70 결정에서는 위 89헌마82 결정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 뒤 ③ 2001. 10. 25. 2000헌바60 결정, ④ 2008. 10. 30. 2007헌가17등 결정에서는 ‘위헌 의견이 다수’였으나 위헌 정족수 6인에 이르지 못하였다가, 헌법재판소 2015. 2. 26. 자 2009헌바17 결정에서 비토소 위헌 결정에 이르게 되었다.

5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53 현재 2016. 3. 31. 2013헌가2 결정 : 헌법 제10조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고, 경제적 대가를 매개로 하여 성행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 또한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되어 있다 볼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개인의 성생활이라는 내밀한 사적 생활영역에서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제한한다. 한편,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하고, 성매매는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 유해성과는 별개로 성판매자의 입장에서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소득활동에 해당함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도 제한하고 있다.

54 성매매처벌법 제1조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성매매 근절을 성매매처벌법의 주된 입법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입법목적에 정당하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연 성매매가 근절의 대상이 되어야 할 해로운 행위인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헌재 2016. 3. 31. 2013헌가2 결정)

현재도 ‘성매매 합법화(비범죄화)’ 논란은 계속 중이다.⁵⁵

3) 비범죄화와 합법화의 구별

(1) 용어의 구별

앞서 본 ‘간통죄’나 ‘혼인빙자간음죄’의 예처럼 처음에는 형사상 처벌되고 있던 것을 이후 입법적 결단에 의하여 이제 형법에 의한 제재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비범죄화’라고 한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런 경우에도 ‘합법화’라는 말을 혼용하기도 한다.

여기서 우리가 구별하여야 할 것은 ‘간통행위’가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인권에 포함된다고 하여 ‘비범죄화(非犯罪化)’를 넘어, 인권의 최대보장을 주장하며 간통을 ‘제도화(制度化) 또는 합법화(合法化)’시키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⁵⁶

(2) 동성애의 비범죄화와 합법화

동성간 성행위(소도미금지법)를 처벌하는 국가에서 동성애를 형법에 의한 통제로부터 제

55 <http://www.nocutnews.co.kr/news/4396103> 성매매 위헌부터 공상제까지... 뜨거웠던 현재 변론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396103#csidx3b298d1c1fbb72d58929785d72624607>

56 간통죄가 비범죄화된 마당에 간통죄의 합법화란 ‘사실상’배우자로서 사실상 혼인관계존부확인(가사소송법 제2조)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사건).

한편,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를 받을 수 있고, 피상속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또는 사망 당시 상속인이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주택임대차보법에 따라 인차권을 승계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국민연금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유족급여 등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헌법재판소 2014. 8. 28. 자 2013헌바119결정, 민법 제1003조 제1항 위헌소원)

외시키는 경향을 ‘비범죄화’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영역에서 일시적으로 ‘합법화’란 말이 혼용되기도 한다. 반면, 동성간 성행위(소도미금지법)를 애당초 처벌하지 않던 국가에서는 ‘비범죄화’란 있을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다. 이미 간통죄는 비범죄화(非犯罪化)되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누군가가 ‘간통죄 합법화(合法化)’를 주장한다면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를 부정하고, 축첩(蓄妾)제도를 제도화시켜 달라는 것인가.⁵⁷

마찬가지로 ‘동성간 성행위(동성애)’를 형사 처벌한 적이 없는 국가에서 ‘동성애 합법화(合法化)’는 ‘비범죄화(非犯罪化)’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는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음에 틀림없다(다만, 우리나라는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동성간 성행위를 ‘추행’으로 처벌하고 있다).

나. 동성애·동성혼과 ‘인권’의 보호영역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성적 지향)와 인권’을 논의 함에 있어 빠뜨릴 수 없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일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는 ‘인권’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 또 제3호에서는 ‘평

57 간통죄의 합법화를 요구한다면, ‘사실혼’배우자로서 사실상 혼인관계존부확인(가사소송법 제2조)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사건).

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금지를 규정하면서 그 예시로서 ‘성적지향’을 열거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동성애(성적지향)’를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는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개념은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초실정법적 인권 개념과는 다르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개념은 헌법에 의한 보장에만 국한하지 않고 법률에 의한 보장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기본권’보다도 더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⁵⁸

우리나라 「헌법」 및 「법률」은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성적지향(동성애) 또는 동성결혼’이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에 포함되는지부터 살펴보자.

2)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1) 국제인권조약

먼저, 「세계인권선언」 전문은 ‘천부(天賦)의 권리’와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확인하고 있고, 제16조는 성인 ‘남녀’가 혼인

58 허완중, 위 논문, 139면

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⁵⁹

나아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B규약)」 제23조제2호는 ‘혼인적령의 남녀가 혼인하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고 있다.⁶⁰

또,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A규약)」 제10조 제1호는 ‘혼인은 혼인의사를 가진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동의하에 성립된다’고 규정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B규약)」 제23조 제3호와 동일한 규정이다.

(2) 성(性)의 개념으로 SEX와 GENDER

한편, 「세계인권선언」 제2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59 [세계인권선언] 전문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
Whereas recognition of the inherent dignity and of the equal and inalienable rights of all members of the human family is the foundation of freedom, justice and peace in the world,

국제연합의 모든 사람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

Whereas the peoples of the United Nations have in the Charter reaffirmed their faith in fundamental human rights, in the dignity and worth of the human person and in the equal rights of men and women and have determined to promote social progress and better standards of life in larger freedom,

60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B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발효일 1990.7.10] [다자조약, 제1007호, 1990.6.13.]

제23조
1.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단위이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혼인적령의 남녀가 혼인을 하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가 인정된다.
3. 혼인은 양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 없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성’의 개념으로 사회적 성 개념(gender) 대신 자연적 성 개념인 ‘SEX’를 사용하고 있다.⁶¹

이러한 점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B규약)」 제2조, 제3조, 제24조, 제26조에서도 마찬가지이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A규약)」 제2조, 제3조도 동일하다.

(3) 소결론

위와 같이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더 나아가,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자유와 권리라고 인정할 근거도 전혀 없다.

오히려, 세계인권선언 제16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B규약)」 제23조 제2호 등 국제인권조약은 혼인은 동성이 아닌 ‘남녀’가 혼인할 권리가 있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서 성적지향(

61 제 2 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such as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동성애)를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3)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과 동성애·동성혼

(1) 「헌법」상 인권으로 보호되는지

앞서 본바와 같이 ‘동성애(성적지향)도 인권이다’라는 주장은 ‘동성간의 성행위(동성애)’도 헌법상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미 앞서 본 바 ‘간통죄’와 달리 ‘동성애’는 형벌로 처벌되지 않고 있으며, (군형법을 제외하고는) 동성애에 대한 제재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동성애 문제에서 간통죄와 같은 인권 즉,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주장할 국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⁶²

(2) 동성결혼 합법화와 「헌법」 제36조

결국, ‘동성애 합법화’ 논의는 ‘동성결혼 합법화’ 즉, 동성결혼을 ‘제도로서 보장’해 달라는 논의일 것이다. 그리고, 인권의 영역에서 ‘제도보장’이란 국가의 존립의 기반이 되는 일정한 법적·정치적 제도를 ‘헌법적 수준’에서 보장함으로써 당해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이다.⁶³

이는 곧 「헌법」 제36조 제1항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것이다.⁶⁴

(3) 평등권 침해

그렇다면,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① 이성결혼과 달리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라는 것이 될 것이다. 결국, 이들이 주장하는 인권 목록 중에 ‘평등권’ 침해의 논의만이 남게 된다(이에 대해 동성애 활동가들은 ‘동성애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고 주장한다).

헌법상 평등원칙의 중심내용은 민주적 법질서의 내재적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회균등(機會均等) 내지 자의(恣意)의 금지이다. 자의 금지원칙은 본질적으로 사회정의의 실현을 의미하는 「동일한 것은 평등하게, 상이한 것은 불평등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⁶⁵ 곧,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라는 것이다.

다. 동성애와 차별금지

1) 인권과 차별행위의 구별

(1) 「법률」에서 인권(침해)과 차별행위의 구별

62 헌법재판소 2015. 2. 26. 자 2009헌바17 결정 :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1953. 9. 18. 법률 제 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 (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63 권영성,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1994, 4, 신판), 362면

64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65 권영성, 헌법학원론(법문사, 1994), 400쪽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1호는 ‘인권’에 대한 정의를 두고, 같은 조 제3호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⁶⁶

이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및 제19조, 제30조 등에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준별하고 있다.⁶⁷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규정하면서, 모든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로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는 ‘① 고용, ② 재화·용역·시설의 이용, ③ 교육과 직업훈련, ④ 성희롱 행위’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66 3.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원적지, 본적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 행위

67 「국가인권위원회법」은 2001. 5. 24. 법률 제6481호로 제정할 당시에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규정하였다.
이후, 2005. 7. 29. 법률 제7651호로 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2조의 ‘용역’의 정의로 자리를 옮겨 제4호에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규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인권침해’와 구별하고 있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서 생략)

-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라. 성희롱 행위

(2) 동성애에 대한 차별행위 실태

필자도 ‘성적지향(동성애 포함)’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가 각 예시하고 있는 영역(위 ① 고용, ② 재화·용역·시설의 이용, ③ 교육과 직업훈련, ④ 성희롱’)에서의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행위는 마땅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 ‘성적 지향(동성애 포함)’으로 인해 이러한 영역에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에 대한 국민일보 2017.5.15.자 기사는 매우 흥미롭다. 국민일보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입수한 ‘2016년 12월말 현재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2001.11.25.부터 2016.12.31.까지 15년 여 동안 성적(性的)지향, 즉 동성애 때문에 발생한 인권침해·차별사건은 11건이었는데, 차별행위에 해당된다는 11건에 대해서도 명확한 차별행위가 발생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는 수사의뢰나 조정, 고발 및 징계권고 결정은 단 1건도 없었다는 것이다.⁶⁸

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

1)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인권활동가들은 (포괄적)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2007.12.12.경부터 (포괄적)‘차별금지법’을 입법하려는 시도를 계속하여 왔다. 특히, 17대(2004~2008년) 국회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였고, 18대(2008~2012년) 국회에서는 의원들에 의해 입법이 추진되었으나, 결국 임기만으로 폐기되었다. 그리고 19대(2012~2016) 국회에서는 대선이후 차별금지법 입법이 강력하

68 국민일보 2017.5.15.자 백상현 기자, 동성애자 과도한 차별 주장 사실 아니었다 : 국민일보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입수한 '2016년 12월말 현재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2001년11월25일부터 2016.년12월31일까지 15년 여 동안 성적(性的)지향 때문에 발생한 인권침해·차별사건은 11건에 불과했다. 이 기간 성적지향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사건은 총81건으로, 성별 일인 인종 종교 등을 이유로 제기된 2만3407건 중 0.3%에 그쳤다. 그나마 44건은 차별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각하했고 18건은 기각됐다. 차별행위에 해당된 11건은 모두 권고결정이 내려졌다. (그런데) 명확한 차별행위가 발생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는 수사의뢰나 조정, 고발 및 징계권고 결정은 단 1건도 없었다.

게 추진되기도 하였다.⁶⁹

2)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

(1) 성평등과 인권 교육

이와 같이 정부와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목적은 「대한민국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한다.⁷⁰

그런데, 정부와 국회가 내세우는 이와 같은 이유는 표면상의 이유이고, 숨겨진 실제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의 이유는 ‘성평등과 인권교육을 공교육에 포함시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확산을 막겠다’라는 것이다.⁷¹

69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자	제안일자	의결(결과)	
1903793	차별금지법안	최원식 의원등 12인	2013.02.20.	2013.04.24.	철회
1903693	차별금지법안	김한길 의원등 51인	2013.02.12.	2013.04.24.	철회
1902463	차별금지법안	김재연 의원등 10인	2012.11.06.	2016.05.29.	임기만료
1814001	차별금지법안	관영길 의원등 10인	2011.12.02.	2012.05.29.	임기만료
1813221	차별금지 기본법안	박은수 의원등 11인	2011.09.15.	2012.05.29.	임기만료
178162	차별금지법안	노회찬 의원등 10인	2008.01.28.	2008.05.29.	임기만료
178002	차별금지법안	정 부	2007.12.12.	2008.05.29.	임기만료

70 의안번호 178002 정부의 2007.12.12.자 차별금지법안 제안이유 : 정부와 국회의 차별금지법 입법 제안 이유는 「대한민국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71 시사in 2017.3.11. 제495호, 75쪽

(2) 성평등과 양성평등

많은 사람들이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같은 뜻으로 이해하는 듯하다.⁷² 그러나, 성평등은 양성평등의 줄임말이 아니다. 여기서 ‘양’자의 삭제는 여성과 남성의 2분법적 구분을 없애고, ‘젠더’를 헌법과 법률에 이식하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한다.⁷³

나아가, ‘성평등’은 남녀 두 개의 성에 국한하지 않고, 수많은 젠더를 인정하겠다는 함의이며, 혼인이 굳이 1남 1녀의 결합일 필요가 없음을 내포한다.⁷⁴

(3) 헌법 개정논의와 ‘성평등’

그런데, 우리나라 현행「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탄핵정국으로 2017. 5. 9.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지고 정권교체가 되면서, ‘헌법 개정’논의가 시작되자, 헌법에 ‘성평등’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기도 하였다(2017. 6. 19.자 제351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회의록 등)⁷⁵

72 시사IN 2017. 3. 11. 제495호, 74쪽

73 이은경 여성변호사협회 회장, 경기일보 2017. 6. 20. 자 특별기고 : 이는 1남 1녀의 결합, 그리고 출산을 염두에 둔 전통적인 혼인과 가족의 개념이 본질적으로 달라 질 수 있다는 말이다.

74 이은경 여성변호사협회 회장, 경기일보 2017. 6. 20. 자 특별기고 : 이는 1남 1녀의 결합, 그리고 출산을 염두에 둔 전통적인 혼인과 가족의 개념이 본질적으로 달라 질 수 있다는 말이다.

75 2017. 6. 19.자 제351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4차(임시회의록), 4쪽 :
먼저 기존의 기본권을 개선 보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각 기본권의 성

마. 성 정체성과 성 평등

1) 성 정체성의 의미

(1) 개념

위키백과에 의하면, ‘성정체성(性正體性, gender identity)’은 자신의 젠더(gender)에 대한 자각, 자아의식을 말하고, 성별 정체성, 성 주체성, 성 동일성이라고도 하며, 성적 정체성과는 다르다고 하고 있다.⁷⁶

(2) 사례 : 여성용 사우나에 들어간 남성

2012년 11월, 워싱턴 주 올림피아에 있는 에버그린 칼리지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이 학교에는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함께 쓰는 수영장과 사우나가 있었는데, 어느 날 여성용 사우나에 들어가던 젊은 여대생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보고 괴성을 질렀다. (자기를 여자라고 하는) 한 남자가 나체로 앉아 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그’에 대한 수사 조서에서 ‘그녀’가 자신의 ‘남성’ 성기를 노출시키고 있었다”고 기록했던 것이다.

여학생들은 큰 충격에 빠졌고, 학부모들은 격분했지만, 정작 학교 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했다. 왜? ‘학교 당국은 주(

격에 따라 기본권 주체를 국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확대할 기본권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평등원칙 중 차별금지 사유를 현행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외에 ‘인종, 언어’ 등을 추가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성평등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에도 대체로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규정은 추후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76 위키백과 : <https://ko.wikipedia.org/wiki/%EC%84%B1%EC%A0%95%EC%B2%B4%EC%84%B1>

성정체성(性正體性, gender identity)은 자신의 젠더에 대한 자각, 자아의식을 말한다. 성별 정체성, 성 주체성, 성 동일성이라고도 하며, 성적 정체성과는 다르다.

* 성적 정체성(sexual identity)이란 스스로 어떤 사람에게 연애 감정이 생기는지, 혹은 성적으로 끌리는지 자신이 판단한 것이다. 성적 정체성은 더 정확히 말해 성적 지향 정체성으로 자신의 성적 지향의 인정 또는 내재화를 뜻하기도 한다.

州, state)법을 따라야만 했을 뿐'이라고 했다. 학교 당국은 '성정체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다며, '성정체성'은 위싱턴 주의 차별금지법으로 보호된다는 것이다.⁷⁷

2) 성 정체성과 인권 교육

그런데, 이런 성 정체성, 성 평등 교육을 '공교육(인권교육)'에 포함시킨다고 하면, '학생들에게 위 위싱턴 주 사례와 같은 경우를 수인하라고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과연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인권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이에 대해서는 이미 초·중·고 교과서에 게재된 내용을 한 번 보라).

어떠한 내용의 인권교육을 포함시키고자 하는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와 특히, 충청남도가 제정한 「충남 도민인권선언」에서 엿볼 수 있다.

■ 동성애와 이슬람의 연대

가. 외국인 노동자와 소수자 보호

1) 이주노동자 조합과 동성애자 인권연대

「충남도민 인권선언」에서는 약자 및 소수자로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최근 이들은 '노동조합, 인권단체'등과 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온 이주민들은 '이주노동자단체'

를 결성하여 우리나라 '민주노총'과 연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⁷⁸⁷⁹ 나아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동성애자인권연대'에서도 활동하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로비 중이었다는 것을 자인하기도 하였다.⁸⁰

인권단체들은 "유럽 국가들에서도 극우운동에 맞서는 운동들은 특히 광범한 사회운동 진영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대중 운동의 형태였다. 예컨대 노동조합, 진보 정당, 무슬림 단체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UNITE라는 연대체가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다.⁸¹

2) 동성애와 이주민, 이슬람 연대

특히, 우리나라는 '동성애자 인권운동'이 '이

78 연합뉴스 2005.05.03.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창립 회견 : 3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 창립기자회견서 아노아트 이주노동자 위원장이 노조 설립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79 연합뉴스 2015.06.25. 이주노동자 노조설립 소송 10년 일지 : 이주노동자 노조 10년 만에 합법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25/0200000000AKR20150625136100004.HTML?input=1179m>

80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7.04.19. 한국에서 쫓겨난 트랜스젠더 이주노동자 '미셸'이 보내온 이야기 http://www.huffingtonpost.kr/2017/04/19/story_n_16094756.html?utm_id=daum :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4대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 '미셸'(2011.3.출국명령) : 저는 한국에서 단암의 대상이었던 이주노동자의 위원장이었어요. 그런데, 정치적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비자가 취소됐요. 우리는 한국의 불공평한 법과 차별적인 정책에 대해 시위를 하고 캠페인을 벌였거든요. 그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저를 끌어내서 필리핀으로 송환시켰을 때 전 비자가 있었던 상태였어요.

저는 '동성애자인권연대'에서도 활동 했는데, 우린 당시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로비 중이었거든요. 이것도 (그들이 말하는) 제 '정치적 활동'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81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책(2016. 1. 28.), 194쪽 ; 최근 독일에서 성장하고 있는 페기다(서구의 이슬람화를 반대하는 유럽애국자들)대항 운동도 혐오에 맞서는 행동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독일 페기다(PEGIDA) [Patriotische Europäer Gegen die Islamisierung Des Abendlandes] 서방세계의 이슬람화에 반대하는 애국적 유럽인

77 성공할 수 없는 동성애 혁명, 마이클브라운 저, 자유와 인권연구소 옮김 (2017.2.), 275쪽

주민노동자'와 연대할 뿐만 아니라, '무슬림(이슬람)'과도 정치적으로 연대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공표한 바 있다. 이들의 연대는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을 치루면서 분명히 드러났다.^{82,83}

3) 다수에 대한 역차별

(1) 소수 종교보호

종래부터 인권단체에서는 '한 사회 내에서 소수자의 지위를 갖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향유하고 유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소수종교를 갖고 있는 시민이 자신이 종교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배려를 받지 못한다면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이때 시 공무원은 단순히 그 시민의 종교생활을 탄압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슬람교도들을 위해 적절한 기도장소를 제공하는 것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여 왔다.⁸⁴

우리나라에서도 2011. 12. 경 모 대학교 '이슬람' 학생들이 기도실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여 국내 대학교 안에 처음으로 이슬람 기

도실이 마련되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기도실은 종래부터 그 대학의 '기독교' 학생회 소속 학생들이 예배실로 활용하고 있었던 곳이다. 이에 학교 측은 '이 공간에 종교적 상징물을 부착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종교적 형평성과 문화적 다양성 측면에서 이슬람 학생들의 요청을 수용하였다는 것이다.⁸⁵

(2) 다수자에 대한 역차별과 관점의 전환

이렇듯, 소수종교의 보호를 위해 기존 종교인들에게는 종래 사용하던 공간에 종교적 상징물을 부착할 수도 없는 조치가 행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 유학하는 이슬람 학생들이 약자인가(기독교 학생회는 강자라는 말인가). 요즘 대학의 복음화율을 보라.

이러한 문제를 다수의 종교(기독교)와 소수의 종교(이슬람교)라는 관점에서 발상을 전환하여, '다수자'들(종교를 갖지 않는 무종교, 2015년 통계 56.1%)이 종교를 갖는 '소수자'들(개신교 19.7%, 불교 15.5%, 천주교 7.9%)의 종교생활을 억압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가.⁸⁶

82 연합뉴스 2016. 05. 24. 성소수자·이주노조, 기독교유당 인권위에 진정 ; 성소수자단체와 이주노동자단체가 동성애와 이슬람 반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기독교유당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83 경향신문, 2016. 05. 24. 시민단체들, '동성애 반대' '이슬람 반대' 내세운 기독교유당 인권위 진정
이날 진정에는 62개 단체와 성소수자, 무슬림, 이주민 당사자와 가족 및 일반시민 3195명이 동참했다.

84 한국인권재단, 서울특별시 공무원 인권 행정 강령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2013. 2), 32쪽

85 C-채널뉴스 2011. 12. 09. 국내 대학교 안에 사상 처음으로 이슬람 기도실 마련 ; 학교측은 종교적 형평성과 문화적 다양성 측면에서 이슬람 학생들의 요청을 수용하였고, 이슬람 기도실을 대학 내에 마련한 것은 이 대학이 최초로 언급하였다고 전함.

86 교회연합신문, 2017. 1. 6. 자 2015 통계청 종교인구 조사 현황 ; 한국 기독교 선교 130여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신교 종교인구가 1위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12월 19일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표본조사 1011만명 중에서 개신교는 19.7%(967만명)로 1위, 불교는 15.5%(761만명)로 2위, 천주교는 7.9%(389만명)로 3위였다.

그리고 종교가 있다고 답한 국민은 43.9%, 없다고 답한 국민은 56.1%였다. 또 종교가 있다고 답한 국민의 98.3%가 이 세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 56.1%는 종교가 없다. 이는 10년전 2005년 조사 때(47.1%)보다 지난 10년간 무종교인이 12.2%나 늘어난 것이다.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인권단체들은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소수자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것은 이른바 ‘적극적 우대조치’로서 허용된다”고 한다.⁸⁷ 그런데, 무종교의 다수자들로부터 종교를 갖는 소수자들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인가.

나. 동성애자들과 이슬람(무슬림) 연대

1) 이슬람 국가와 동성애자 처벌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고 있는 많은 중동지역 국가들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성

애를 형벌로 다스리고 있다.⁸⁸

이와 같이 이슬람은 교리상 ‘동성애’를 범죄로 여기고 있기에 ‘이슬람(무슬림)과 동성애자들’이 연대한다는 것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공통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교회)에 바탕을 둔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의 전통적 결혼질서를 무너뜨리는데 있다.

2) 성적 지향(동성애)과 일부일처제 붕괴

87 한국인권재단, 서울특별시 공무원 인권 행정 강령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2013. 2), 32쪽

88 출처: <http://www.giapn.org/sodomylaws/> 중동지역 국가들의 동성애자에 대한 법적 판단 [표1]

중동국가	여성 동성애자	남성 동성애자	법정 최고형
이란	불법	불법	사형
아랍에미리트	불법	불법	사형
예멘	불법	불법	사형
사우디아라비아	불법	불법	사형
바레인	불법	불법	10년
팔레스타인	불법	불법	10년
쿠웨이트	불법	불법	7년
카타르	불법	불법	5년
오만	불법	불법	3년
레바논	불법	불법	1년
시리아	불법	불법	1년
이라크	합법?	합법	합법, 금기시?
이스라엘	합법	합법	
요르단	합법	합법	

(1) ‘성적지향(동성애 포함)’의 의미

그렇다면, 동성애 또는 동성결혼이 왜 일부일처제의 전통적 결혼제도를 붕괴시킨다고 하는가. 우리는 ‘성적지향’이란 용어에 익숙하지 않기에, ‘동성애’로 이해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성적 지향(性的指向, Sexual orientation)은 자신이 이끌리는 이성, 동성, 혹은 복수의 성 또는 젠더를 말한다.”고 하는 경우, 이러한 성적 지향이 ‘복수의 성’에 이끌리는, 즉 ‘양성애자(兩性愛)’인 경우 개념 논리적으로 ‘중혼(重婚)’도 포함되게 된다.

이렇듯, ‘성적 지향(性的指向, Sexual orientation)’에는 이성애, 동성애뿐만 아니라, 복수의 성에 이끌리는 ‘양성애(兩性愛)’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성적지향(동성애, 양성애자 포함)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혼인 제도는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유럽의 동성결혼 합법화 과정(독일의 사례)

최근 2017. 6. 30. 독일 하원은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표결을 하였는데, 동성결혼 합법화 여부에 대한 독일 하원의 표결은 독일 메르켈 총리가 “의원들이 ‘양심의 문제’로 향후 동성결혼 이슈를 다룰 수 있다”고 말한 지 불과 나흘만이다.⁸⁹ 당시 표결에서 동성결혼 허

용 안건은 393표 대 226표로 가결되었다.⁹⁰

그런데, 이 때 독일 하원의 ‘무슬림 의원 전원’이 ‘동성결혼 합법화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이슬람교는 동성애를 원천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이들의 선택에 눈길을 끈다.⁹¹

이와 같이 독일 하원의 ‘무슬림’ 의원이 ‘동성결혼 합법화’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전략적인 (tactical)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동성결혼 합법화’가 ‘일부다처제(一夫多妻制, polygamy)’의 문을 열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한다.⁹²

를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동성결혼에 대한 법안이 연방하원에 상정될 경우 기민-기사당 의원들이 당론과 무관하게 자유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기민-기사당 연합은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해왔고, 메르켈도 이에 동조해왔다가 4번째 연임이 걸린 이번 총선을 앞두고 상당히 유연해진 태도를 보인 것이다.

메르켈의 이 같은 변화는 동성결혼 합법화가 9월 총선의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9월 총선 결과에 따라 연정 구성의 캐스팅 보트를 쥌 수도 있는 녹색당이 최근 동성결혼 합법화를 차기 연정 참여 전제로 삼은 데 이어, 기민-기사 연합의 최대 라이벌인 사회민주당 역시 이를 차기 연정 참여 전제로 내걸었다. 특히 사민당은 총선 후 100일 안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구제적인 입법 시간표를 제시했다. 사민당 소속 하이코 마스 법무장관은 최근 “동성결혼 합법화는 정의의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독일 내 여론도 동성결혼 합법화에 상당히 우호적이다. 지난 1월 독일 연방 반차별기구의 연구 결과, 독일인의 83%가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지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독일은 지난 2001년 동반자등록법을 도입해 동성 커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은 기민-기사 연합의 반대로 연방 의회에 계류돼 왔다.

90 연합뉴스 2017.06.30. 獨 동성결혼 합법화 의회 통과, 메르켈은 반대 ; 독일 하원의 동성결혼 허용법안 표결 당시 원내 좌파 계열 사회민주당, 좌파당, 녹색당 등 3당 소속 의원이 모두 합치면 320명이었다. * 독일하원 의석수는 631석이고, 기독교민주당(255석)과 기독교사회당(56석)의 의석수는 311석 ; 사민당 193석, 좌파당 64석, 녹색당은 63석.

91 뉴스스 2017.7.3. 독(獨) 무슬림 의원 모두 동성결혼 찬성..... 극우 정당, ‘소송’으름장

92 JIHAD WATCH, JULY 2, 2017. BY ROBERT SPENCER ; “All of Germany’s Muslim MPs voted in favour of same-sex marriage,” by Greg Wilford, Independent, July 2, 2017.

89 KBS 뉴스 2017.06.27. 獨 동성결혼 합법화 길 열리나...메르켈, 자유투표 시사 ; 독일에서 9월 총선 이후 동성결혼의 합법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26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집권 기독교민주당-기독교사회당 연합을 이끄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의원들이 ‘양심의 문제’로 향후 동성결혼 이슈

다.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정복

1974년 유엔 총회에서 알제리 대통령(후아리 모하메드 부메디엔느, Houari Mohamed Boumedienne)은 “언젠가는 남반구의 남성 수백만 명이 북반구로 이주하는 날이 온다. 그리고 그들은 북반구의 친구가 아니라 정복자로서 이주해서 그들의 자손으로 북반구를 정복하게 된다. 우리 여성의 자궁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1991년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이슬람 종교지도자(물라 크레카르, Mullah Krekar)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럽을 보라. 무슬림인구가 모기처럼 늘어나고 있다. EU 지역에 거주하는 서양 여성의 평균 출산율은 1.4명이지만, EU 지역에 거주하는 무슬림 여성의 평균 출산율은 평균 3.5명이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당신들의 사고방식보다 훨씬 막강하다는 사실이 증명될 것이다.”⁹³

이슬람은 이제 폭력이 아니라, 무슬림 여성의 자궁, 헤지라(hegira, 이민), 서구 사회의 자유를 역이용해서 서구사회를 정복하게 된다는 것이다.

■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인권의 역사는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한 교회의 역사였다. 그런데, 최근 종교적인 예배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종교의 자유는 암암리에 축소되고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들이 훼손당하고 있다.⁹⁴

사람들은 제2차 대전에서 겨우 살아남았고, 그들의 희망을 유엔이라는 새로운 국제기구에 걸었다. 그런데, 50년 후, 바로 그 유엔이 ‘인권’ 또는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태아를 살해하려는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그리고 동성커플에게 결혼과 동일한 법적 권리를 주려는 국가들을 위해 싸우는 장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는 (군형법을 제외하고는) 행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자유의 영역에 맡겨져 있다. 다만, 헌법상 양성평등을 전제로 하는 ‘혼인(결혼)제도’에서 동성혼은 허용되지 않으며, 차별이 존재한다. 그러나, 성적지향으로서 동성애는 ‘출산능력’에서 이성애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혼인과 가족제도에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

침묵은 배반이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사회적 전환기에서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
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
는 침묵이었다고.”*

마틴 루터 킹 목사

93 홍지수, 트럼프를 당선시킨 PC의 정체, 북앤피플, 80~81쪽

94 가브리엘 쿠비 지음, 정소영 옮김, 글로벌 성혁명, 밝은생각(2018), 23쪽